제 5 2 8 호
75.10.29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편 집 : 문화공보실장 조 용 하
전화 75-7834
인 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시 보

차 례

◎조 례
제 991 호 : 서울특별시방역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 ····· 3
제 992 호 : 서울특별시가스공급조례개정조례 ····· 3
제 993 호 : 서울특별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 5
◎규 칙
제 1529 호 : 서울특별시립보건소직제중 개정규칙 ····· 8
제 1530 호 : 서울특별시립병원직제중 개정규칙 ····· 8
제 1531 호 : 서울특별시사무분장규칙중 개정규칙 ····· 8
◎훈 령
제 434 호 : 서울특별시립병원임상연구비지급규정 ····· 10
◎고 시
제 177 호 : 도시계획시설(시장) 변경및 지적승인 ····· 11
제 178 호 : 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및 지적승인 ····· 12

(이면계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0073

◎공　　고

제 257 호 : 서울특별시성북구보건소장관인개각공고 12

제 258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실시계획 공고 13

제 260 호 : 전기용품제조업허가 (면허) 취소공고 14

제 261 호 : 서울특별시장관인 (차량등록전용) 공고 15

◎사　　령 15

◎출석통지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 17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방역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5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조례제 991 호

서울특별시방역사무소
설치조례폐지조례

서울특별시조례제 89 호(1956. 5. 23)서울특별시 방역사무소 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7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가스공급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5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조례제 992 호

서울특별시가스공급
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가스공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 조 제②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전항의 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수요자이어야 한다.

제 5 조제①항 단서중 "다만 시장이"를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장이"로 하고 제③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 1 항 단서의 시공업자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승인　10,000원
2. 승인사항의 변경 또는 갱신　5,000원

제 7 조제①항중 "공급관과 내관의 공사비"를 "공급관과 내관(가스미터 까지의 공사비)의 공사비"

로 한다.

제8조제①항중 설계수수료 "300원"을 "1,000원"으로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가스공급공사 준공시 까지 분납 또는 일시 납입케할 수 있다"로 한다.

제11조제①항중 제1호를 삭제하고 "2호"를 "1호"로 "4호"를 "3호"로 하되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스사용을 개시하거나 사용을 중지코자 할 때.
2. 가스소비량이 시간당 15,000 Kcal이상을 사용하고자 할 때

제12조제②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 취득한자에 대하여는 시장이 직권으로 그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제②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② 시설의 수리, 복구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월중 10일 이상에 걸쳐 가스공급이 중단되었거나 가스의 신설중지 또는 정지로 인하여 사용기간이 월중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별표 제1 및 제1-2의 요금표의 기본요금중 기본수량은 계측량에 의하여 실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제19조제1항중 "매월"을 "매월 또는 격월"로 "사정"을"결정"으로 하고 제②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전항에 의한 격월 검침시의 월 사용량은 이를 등분하여 산출 결정한다.

제21조제②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②시장은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격월 검침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2개월분 사용료를 일시에 납입 고지하여 징수한다.

제22조제③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공급의 중지 또는 정지등으로

으로 가스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징수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가산금) 가스사용자등이 사용료를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와 제8조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공사비를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28조제①항중 "10일 이내"를 "15일 이내"로 제②항중 "20일 이내"를 "7일 이내"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권한의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의 일부를 도시가스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인

1975년10월29일

◎서울특별시조례제993호

서울특별시시민회관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 관 : 강당(별관)을 말한다.
2. 설 비 : 연예, 음악, 영화 및 기타 집회에 필요로 하는 일체 부속설비와 냉난방 장치를 말한다

제7조중 3항을 삭제하고 4항을 3항으로, 5항을 4항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관 사용료

구분	사용료	오전 07:00 ~ 11:30	오후 12:30 ~ 17:00	야간 18:00 ~ 22:30
강당 (별관)	평일	25,500	59,500	85,000
	토, 일, 축일	31,700	74,300	106,000

2. 기타

구분	단위	사용료	비고
영화촬영	1일 3시간	10,000	3시간 초과시는 매시간 3천원씩 가산
중계방송	1회	3,000	
탑신현수막개시	1회 3일이내	5,000	3일 초과시 1일에 1,000원씩 가산
전기사용		(관허요금)	

별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속설비사용료－

종 별	품 명	단 위	사 용 료
악 기	피아노 (대형)	대	10,000
	〃 (중형)	〃	5,000
	〃 (소형)	〃	2,000
음향장치	마이크	〃	2,000
	무선마이크	〃	4,000
	턴테블	〃	1,000
	레이크레코드	〃	2,000
조명장치	25 Kw 이상조명	일	20,000
	25 Kw 이하조명	〃	15,000
	20 Kw 미만조명	〃	10,000
무대장치	연 단	식	5,000
	회의용 탁자		
	회의용 의자		
영사장치	영사기	식	10,000
	랏슈시사	권	1,000
	녹음시사	〃	1,000
	실건영화	일	1,000

별표 제3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냉난방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 시간	오 전	오 후	야 간
강 당 (별관)	14,000	18,000	18,000

냉난방 징수기간

냉방 6월 15일 - 8월말

난방 11월 15일 - 3월말

규 칙

서울특별시립보건소 직제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인

1975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규칙제 1529호

서울특별시립보건소 직제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립보건소 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제2항 제1호 차목을 카목으로 하고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부랑 나환자 단속

부 칙

이 규칙은 197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립병원 직제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인

1975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규칙제 1530호

서울특별시립병원 직제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립병원 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제2항 제2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전염병 환자 후송 (서대문병원에 한함)

부 칙

이 규칙은 197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사무분장 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인

1975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규칙제 1531호

서울특별시사무분장 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사무분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25조(보건예방과) ①보건예방과에 방역계, 간호사업계, 가족계획계와 마약계를 두고 방역계장은 지방보건기사로, 간호사업계장은 지방간호기사로 가족계획계장은 지방의무기사, 지방보건기사 또는 지방간호기사로, 마약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보건예방과의 계별분장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 역 계
   가. 각종 질병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나. 법정 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
   다. 공중 소독 실시
   라. 기생충의 구제와 예방
   마. 정호 및 공설 공중탕의 관리
   바. 각종 방역장비 수리센타의 운영
   사. 약품희석탱크의 운영관리
   아.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간호사업계
   가. 간호원, 조산원의 신고, 교육 및 표창
   나. 간호사업에 대한 각종 통계
   다. 간호보조원 양성에 관한 사항
3. 가족계획계
   가. 가족계획의 지도
   나. 산업 및 모자보건에 관한 사항
   다. 구강보건에 관한 사항
   라. 정신위생, 위생보호에 관한 계몽지도
   마. 기타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마 약 계
   가. 마약의 제제신청의 진달
   나. 마약류 취급자 면허신청의 진달
   다. 마약사범 및 습관성 약품사범의 단속
   라. 기타 마약관리에 관한 통제
   마. 마약의 수급
   바. 한외 마약제제의 허가

부 칙

이 규칙은 197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0077

훈 령

서울특별시립병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75 년 10 월 29 일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인

◎서울특별시훈령제 434 호

서울특별시립병원임상연구비 지급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립병원직제 제 8 조의 규정에 의한 정신과, 결핵에 관한 임상연구에 소요되는 임상연구비 (이하 연구비라 한다) 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대상) 연구비는 서울특별시립정신병원과, 결핵병원 (서대문) 에 근무하는 일반직 지방공무원 3 급 이상의 의사로서 임상연구를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되 그 임상연구의 과제별로 한다.

제 3 조 (연구계획서의 제출) ①연구비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연구계획서를 보건사회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과제
2. 연구내용
3. 연구의 완결 예정 년월일
4. 연구비의 소요명세
5. 연구참가자가 있을 때에는 그 명단
6. 기타 참고사항

②병원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 조 (지급의 한계) ①연구비는 매 연구과제마다 50 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급한다.

②연구과제가 방대하여 3 인이상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 연구과

제마다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③동일인에게는 같은 해에 2개 이상의 과제에 대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1개 과제씩 따로 연구하는 경우에는 2개 과제에 대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방법) 연구비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배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연구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산급을 할 수 있다.

제6조(연구비의 목적이외의 사용금지등)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연구비는 해당연구 목적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소정의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연구비를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지급받은 연구비의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 병원장은 매회계년도 종료일로 부터 1개월 안에 연구비의 지급상황 및 연구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177호

도시계획시설(시장) 변경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제59호(75.4.29)로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시장)을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동법제13조 및 건설부고시제123호(73.4.4)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중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5. 10. 29

서 울 특 별 시 장

가. 변경조서

시설명	위치	면적 (㎡) 기정	추가	변경후	비고
시장	중구명동1가53-1 외4필지	782	233	1,015	미즈백화점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178호

도시계획시설(시장)결정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도시계획시설(시장)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 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와 건설부고시 제123호(73.4.4)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강남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 10. 30

서울특별시장

가. 시설조서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시장 (압구정시장)	강남구영동2-4지구757구획1호	2,026	신설

별첨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과 강남 구청에 보관.

공고

◎서울특별시공고제257호

서울특별시성북구보건소장관인 개각공고

다음과 같이 당시 산하 성북구 보건소장의 관인을 관인규정 및 서울특별시공인조례에 의거 개각하였기 이를 공고함.

1975. 10.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1. 판인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장 직인 및 계인

2. 사용일시 : 75. 11. 1　　09 : 00

	폐 기 인 영	계 각 인 영
직 인		
계 인		

◎ 서울특별시공고제 258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 160 호 (75. 10. 10) 로 고시된 신당천 복개공사 구간내에 저촉되는 토지의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 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

2. 관계도서는 중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 . 10

서 울 특 별 시 장

공 람 개 요

1. 사업시행의 위치 : 중구 신당동

0079

302-4 -중구 신당동359-4 간 하천

2. 사업의종류와 명칭 : 신당천 복개 공사

3. 사업의 규모

①암거 150미터 (2.7미터×2.0미터×2련)

4. 사업의 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 : 75.10.10 - 1975.12.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토지조서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 별첨.

토 지 조 서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수용대장)		소유자		관계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1	신당동	무	하천	2,987					국	
2	〃	〃	도로	203					〃	
3	〃	370-54	〃	97					〃	
4	〃	359-4	〃	13					〃	

○서울특별시공고제260호

전기용품제조업허가 (면허) 취소공고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3호의 규정에 의거 전기용품 제조업 허가 (면허) 를 취소하고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75.10.28.

서 울 특 별 시 장

업체명	대표자	허가번호	소재지	취소사유
세일전자공업사	황창은	6-70-가	성북구종암동55-27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제8조1항5호

◎서울특별시공고제261호

서울특별시장관인(차량등록전용)공고

관인규정 및 서울특별시 공인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장 관인(차량등록전용)을 신조 하였기 이를 공고함.

1975.10.20.

서 울 특 별 시 장

1. 관인명 : 서울특별시장의 직인 및 계인
   (차량등록 전용)
2. 사용개시일시 : 1975 . 10 . 20 . 09 : 00
3. 관인의 인영

직 인	계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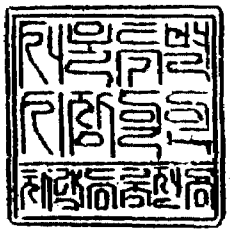	

사 령

◎ 1975. 10. 28

도로시설과 지방전기기사 전병욱

강남구 근무를명함.

양서출장소 지방토목기사보 유근무

영선과 근무를 명함.

중부병원 지방간호기사보 정진숙

서대문병원 근무를 명함.

서대문병원 지방간호기원 신영애

중부병원 근무를 명함.

관 악 구 지방건축기원보 조순영

시립운동장 근무를 명함.

성 북 구 지방토목기사 노홍진

75.10.7. 대법원 파면취소

판결에 의거 72.6.21 (발령제331호)

지방공무원법제69조의 1, 2호에 의한

파면처분을 동일자로 취소함.

역청사업소 근무를 명함.

성 북 구 지방토목기사 고육배

75.10.7. 대법원 파면취소

판결에 의거 72.6.21 (발령제331호)

지방공무원법제69조의 1, 2호에 의한

파면처분을 동일자로 취소함.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 1975. 11. 1

행 정 과 지방행정주사보 김배호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행정과 근무를 명함.

구획정리과 지방토목기원 노의영

지방토목기사보에 임함.

2호봉을 급함.

구획정리과 근무를 명함.

조순영

지방전기기사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연료과 근무를 명함.

이광조

지방건축기사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영선과 근무를 명함.

한영택

지방보건기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정신병원 (병리) 근무를 명함.

유원호

지방보건기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정신병원 (병리) 근무를 명함.

이길자

지방보건기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성북구보건소 (병리) 근무를 명함.

서부건설사업소 (소장직무대리) 토목기좌 정태무

지방토목기좌에 임함.

서부건설사업소 소장에 보함.

토목시험소(토질과장직무대리) 토목기사 박 득 성

지방토목기사에 임함.

토목시험소 토질과장에 보함.

방역사무소 지방보건기사 변 상 덕

보건예방과 방역계장에 보함.

보건예방과 지방보건기사 이 종 화

성북구보건소 방역과장에 보함.

서 울 특 별 시 장

○ 출석통지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

지방행정서기 이 용 민

지방행정서기 김 진 귀

지방행정서기보 박 창 길

귀하에 대한 소청심사 기일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기 소정 절차규정 제8조에 의하여 통지하니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출석일시 : 1975. 11. 15. 14 : 00

나. 출석장소 : 기획상황실 (인사과)

1975년 10월 21일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이 용 민 귀하

김 진 귀 귀하

박 창 길 귀하

0081